
2012년도 대학연구인력 국제교류 지원사업 신청요강

2012. 3.





주요사항 요약

구분	2011	2012	비고
지원예산	① 총예산 : 3,471백만원(136과제) - 대학교수해외방문 : 3,421백만원 (135과제) - 외국인교수초빙 : 50백만원(1과제)	① 총예산 : 2,776백만원(110과제 내외) - 대학교수해외방문 : 2,776백만원 - 외국인교수초빙 : '11년 종료	
예산배분	① 지역별 배분 - 북미주(미국, 캐나다) : 50% - 북미주 외 : 50% ② 학문분야별 수요 대비 균형(신청과제수 및 연구비 고려)	① 학문분야 - 인문사회분야 : 예산의 60% 내외 - 과학기술분야 : 예산의 40% 내외 ② 지역별 배분 - 북미주(미국, 캐나다) : 50% - 북미주 외 : 50% ③ 학문분야별 수요 대비 균형(신청과제수 및 연구비 고려)	
지원형태 및 분야	① 단독 또는 공동연구 ② 전 학문분야	좌동	
지원기간 및 규모	① 6개월 : 1,500만원 ② 1년 : 2,700만원	좌동	
지원대상	① 국내대학 전임교원으로 연구실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해외방문연구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인문사회분야 3편, 이공분야 5편 이상	① 좌동 ② (시범지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자로 연구실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인문사회분야 3편, 이공분야 5편 이상	
우대사항	① 해외연구자와의 공동연구 : 3점	① 해외연구자와의 공동연구 : 2점 ② 지방대학 소속 : 2점 ③ 신진교수 : 2점 ④ 국내박사학위 취득자 : 1점 → 가산점은 최대 4점으로 한정	
연구개시일	① 2011. 1. 1 ~ 2011. 12. 31	① 2012. 7. 1 ~ 2013. 6. 30 ※ 2012. 1. 1 ~ 6. 30사이에 기출국한 연구자의 경우 연구개시일 소급 지원	
제출서류	① 연구계획서(국문 및 파견국 언어) ② 방문연구기관 동의서 또는 교환서신 등 증빙서류 및 번역문 ③ (공동연구) 공동연구자 공동연구 수락서 ④ (공동연구) 공동연구자 이력서	① ~ ④ 좌동 ⑤ (해당자) 국내대학 박사학위 취득증명서	
평가절차 및 항목	① 요건심사⇒패널평가⇒종합평가 ② 심사항목(배점) - 연구역량(50), 타당성(20), 독창성(15), 공헌도(10), 구체성(5)	① 좌동	
추진일정	① 2010. 7월 공고 - 9월 신청 - 10~12월 평가	① 2012. 3월 공고 - 4월 신청 - 5~6월 평가	



차 례

I. 사업목적 및 사업개요	
1 사업목적	1
2 지원근거	1
3 '12 중점 추진방향	1
4 기대효과	2
5 추진일정	2
II. 지원내용	
1 예산	3
2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	3
3 지원유형	4
4 우대사항	4
5 연구개시	4
III. 신청	
1 신청자격	5
2 신청기간 및 방법	5
3 신청절차	6
4 신청 및 참여제한	8
IV. 평가 및 선정	
1 평가단계	10
2 평가항목 및 배점	10
3 평가절차 및 내용	10
4 선정 및 협약체결	11
V. 연구비 관리	
1 연구비 지급	12
2 연구비 관리	12
VI. 연구과제 관리	
1 연구과제 수행	13
2 보고서 제출	13
3 연구성과 관리	15
VII. 기타	
1 간접비 지급	17
2 학술지 평가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17
3 기타 참고사항	17
[붙임] 평가항목 및 배점	19

1. 사업목적

- 국내·외 연구자간 공동연구, 학술교류, 협력활동* 등을 통한 국내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
 - * 전공분야에 대한 새로운 해외 전문지식 습득 및 학문연구의 주류 파악 기회 제공
- 국내에서 축적된 우수한 연구역량의 국제적 확산으로 국가 위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

2.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8조(학술교류와 협력활동)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3. '12 중점 추진방향

소외 연구계층을 위한 기회 확대

- 과학기술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기회가 부족한 인문사회분야 확대 지원(인문사회분야 60%내외, 과학기술분야 40%내외 예산 배정)
 - ※ '13년에는 인문사회분야만 지원 예정
 - 인문사회 출연(연) 연구원(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산하)까지 지원
- 신진교수* 및 국내대학 박사학위, 지방대학 교수가 새로운 연구동향 및 강의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우대
 - * 신청일 기준 최초 임용된 지 7년 이내의 교원

해외 방문연구 내실화 도모

- 해외연구자와의 공동연구 장려를 통해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
- 국제적 학술지 게재를 의무로 하여 연구자의 국제 경쟁력 강화 유도

□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등 사업관리 강화

- E-mail 등으로 중간 활동사항을 파악하여 과제진행사항 점검
 - ※지원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제점 파악 후 개선·보완
- 외부 전문가 활용, 그 동안의 사업성과 분석
- 성과발표회 개최로 국내 연구자간 교류의 장 마련

4. 기대효과

- 해외학자와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인문분야 연구자들에게 국외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실질적인 공동연구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

5. 추진일정

일 정	추진 내용
2012. 2월	- 2012년도 대학연구인력 국제교류 지원사업 기본계획 확정
2012. 3월	- 2012년도 신규과제 공고
2012. 4월	- 신청 접수
2012. 5월	- 1단계 요건심사, 2단계 패널평가
2012. 6월	- 3단계 종합평가 및 선정과제 발표
2012. 7월	- 연구개시(7. 1 ~)
2012. 8월	- 연구진행 관리 및 과제신행사항 점검(중간 모니터링)
2012. 9월	- 연구진행 관리 및 과제신행사항 점검(중간 모니터링)
2012. 10월	- 연구진행 관리 및 과제신행사항 점검(중간 모니터링)
2012. 11월	- 성과발표회 개최
2012. 12월	- 연구진행 관리 및 과제신행사항 점검(중간 모니터링)

1. 예산

□ 지원비 및 신규과제수 : 총 2,776백만원(110과제 내외)

※ 동 사업은 간접비 지원대상 사업이 아니므로 별도 지원하지 않음

□ 예산 배분 기준

- 인문사회분야(예산의 60%내외), 과학기술분야(예산의 40%내외)로 배정
- 특정국가 편중 지양을 위하여 북미주(미국, 캐나다) 지역과 북미주 이외의 지역에 각 각 50%씩 배분
- 학문분야별 수요 대비 균형유지를 위하여 신청과제 수 및 연구비를 고려하여 예산 배분

※ 선정 시 예산배분 순서

①인문사회분야와 과학기술분야, ②방문지역별, ③학문분야별

2.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

□ 지원분야 : 전 학문분야

- 편람, 사전편찬, 교재개발, 번역,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 국내 대학 전임교원으로 해외방문연구에 결격사유가 없는 연구자
- (시범지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자*로 해외방문연구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전임연구원에 해당, 국내국적을 가진자

3. 지원유형

- 지원형태 : 단독연구 또는 공동연구
- 지원규모 및 기간 : 6개월(1,500만원), 1년(2,700만원)

4. 우대사항

- 조건별 가산점 점수

조건	공동연구	지방대학 소속	신진교수	국내박사학위	비고
점수	2점	2점	2점	1점	가산점 총합 4점으로 한정

- 해외 공동연구자 자격 : 해당국 대학 전임교원 및 연구소 전임 연구원 이상
- 지방대학 범위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대학 전임교원(단, KAIST, 광주과학기술원, POSTECH 제외)
- 신진교수 : 신청일 기준 최초 임용된 지 7년 이내의 교원

5. 연구개시

- 연구개시일 : 2012년 7월 1일 ~ 2013년 6월 30일 (출국일부터 적용)
 - ※ 2012. 1. 1 ~ 2012. 6. 30사이에 기출국한 연구자의 경우도 출국일로부터 연구개시일 적용
 - ※ 2013. 6. 30까지 출국하지 않은 경우 선정 취소

1. 신청자격

- 국내 대학 전임교원 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자(전임연구원이며 국내국적을 가진 자)로 아래와 같은 연구 실적이 있으며, 해외방문 연구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연구 실적

- 2007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국내외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 & SCIE급, A&HCI급·SSCI급, SCOPUS급) 학술지> 게재 논문, 등록 완료된 국제특허 또는 전문학술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등의 **연구 실적이 인문사회분야 3편, 이공분야 5편 이상**
 - 단독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2편으로, 공동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1편으로 산정함
 - 단, 상기 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는 심사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온라인 신청 시에 입력하여야 함

- 해외공동연구자 자격 : 해당국 대학 전임교원 및 연구소 전임 연구원 이상

2. 신청기간 및 방법

- 연구자 신청 : 2012. 4. 30(월) 11:00 ~ 5. 9(수) 18:00까지
- 기 관 확 인 : 2012. 5. 10(목) 11:00 ~ 5. 11(금) 18:00까지
- 신 청 방 법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 제 출 서 류

[사업 신청 시]

※ 단독연구의 경우

- 국문 및 파견국 언어(또는 영문) 연구계획서 각 각 1부
- 방문연구기관 동의서 또는 교환서신(e-mail 가능) 등 증빙서류 및 번역문 각 1부

※ 공동연구의 경우

- 국문 및 파견국 언어(또는 영문) 연구계획서 각 각 1부
- 공동연구자 이력서 및 번역문 각 1부
- 방문연구기관 동의서 또는 교환서신(e-mail 가능) 등 증빙서 및 번역문 각 1부

※ 국내대학 박사학위자의 경우

- 박사학위 증명서 1부

[사업선정 후 출국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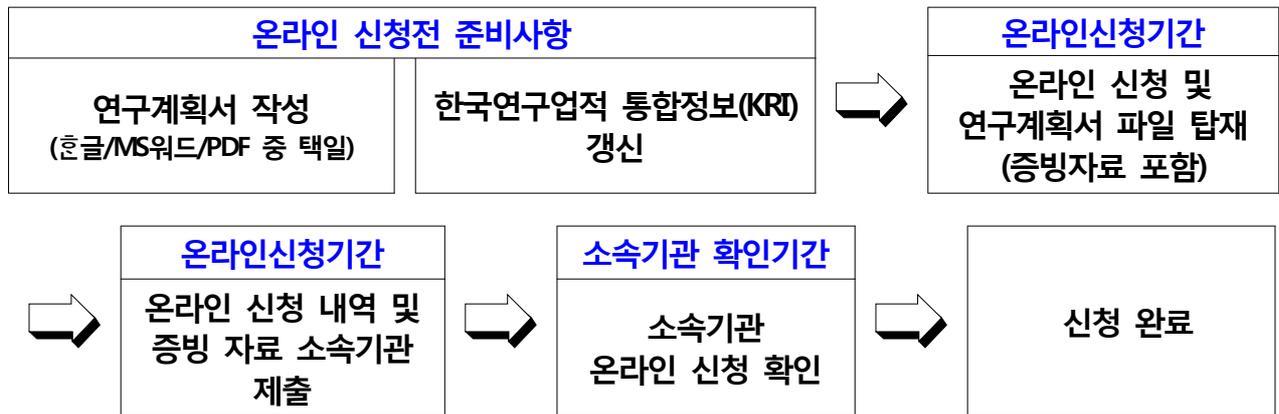
※ 단독연구의 경우

- 방문연구기관의 정식초청장 및 번역문 각 1부

※ 공동연구의 경우

- 방문연구기관의 정식초청장 및 번역문 각 1부
- 공동연구 역할분담 내용에 따른 공동연구수락서 및 번역문 각 1부

3. 신청절차



가. 온라인 신청 전

- 1) 소속대학(교) 및 연구기관을 통해 해외방문연구 추천 가능 여부 확인
- 2) 연구자는 재단 홈페이지 정보서비스 → 연구기반정보 → 「한국연구업적 통합정보(KRI)」에서 본인의 정보(연구업적 등)를 입력, 수정하여야 함(신청 후 추가 등록된 정보는 반영되지 않음.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 취소 후 다시 신청하여야 함)

※ KRI 정보 갱신 시 소속, 직위, 이메일 주소 등 필수 입력사항을 미기재한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신청 전 사전 확인). 정보 공개 여부는 반드시 공개로 설정

- 3) 온라인 신청 시 연구계획서 파일(국문, 영문), 방문동의서 또는 교환서신(e-mail 가능)등 증빙서류를 모두 탑재하여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 전에 「한글」, 「MS워드」, 「PDF」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재단의 소정 양식으로 미리 준비 (PDF 파일 권장) (※연구계획서와 증빙자료는 각각의 파일로 준비하여 탑재)
- 4) 온라인 신청 시 연구요약문(연구목표, 기대효과, 연구요약, 한글키워드, 영문키워드)을 직접 입력해야 하므로 사전 준비 필요

5) 신청과제의 평가분야 및 담당 학문단은 연구분야분류표에서 사전에 확인 하여야 함

※ 연구분야분류표 확인 : 재단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사업마당→연구분야분류표→학술연구분야

※ 연구분야 및 평가관련 사항은 해당 학문단으로 문의

6)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4)를 작성하여(서명 날인) PDF파일로 준비

나. 온라인 신청

1) 연구자는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사항"을 입력하고, 작성한 "연구계획서(국문 및 영문 1개의 파일)"와 "증빙서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각각 탑재하여야 함(접수번호는 온라인 신청완료 후에만 확인 가능)

2) 연구책임자의 대표업적은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연구실적 중 인문사회는 3편, 이공분야는 5편을 선택하여야 함

- 국내외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 & SCIE급, A&HCI급·SSCI급, SCOPUS급) 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는 심사 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에서 입력하여야 함

3)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는 입력한 신청내용과 계획서 및 증빙서류 파일의 교체가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 마감일 후에는 교체·수정이 불가능함

- 교체 및 수정한 후에는 신청완료 버튼을 반드시 다시 클릭해야함(클릭하지 않았을 경우는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

4) 온라인 신청 및 연구계획서 및 증빙서류 파일을 탑재하고 접수번호를 부여 받았을 경우에 신청이 완료된 것이며, 접수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과제번호는 신청 마감 이후에 일괄적으로 부여됨(접수번호와 과제번호는 다름)

- 연구계획서 파일을 탑재하기 전 『인쇄-미리보기』에서 1쪽씩만 보이는지 확인한 후 탑재함(『인쇄-인쇄방식』을 ‘자동인쇄’로 바꾼 후 저장)

8) 융합연구과제로 신청할 연구자는 연구분야분류표의 대분류 기준 중 2개를 반드시 심사희망분야 1, 2순위로 선택해야 함

※ 연구분야분류표 대분류 학문분야 기준 :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 예술체육, 복합학

- 9)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탑재함(연구계획서와 별도 분리, 양식은 붙임 참조)

다. 온라인 신청 후

1) 연구책임자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입력내용(계획서 및 증빙자료 일체 포함) 1부를 출력하여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에 제출

2) 신청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산학협력단 등)

- 신청기관(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연구비 중앙관리부서는 연구책임자로부터 신청 입력내용 1부를 제출받고 기한 내에 신청기관 확인을 완료해야 하며, 확인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되지 않음

4 신청 및 참여제한

신청제한에 관한 사항

-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하반기 공모 사업 내에서는 1과제만 신청 가능
 - ※ 학문후속세대(시간강사)지원, 일반공동연구지원, 토대연구지원, 대학중점연구소지원, 학제간융합연구지원, 인문한국(HK)지원, 한국사회과학연구(SSK)지원, 기초학문자료센터 中 1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 ※ 공동연구원은 신규 신청과제수와 기참여과제수를 포함하여 3과제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본 사업 내에서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고 해당 연구과제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학술진흥법」 제19조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

-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로 인하여 현재 제재 중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는 제재조치의 내용(범위 및 기간 등)에 따라 신청 제한

□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3과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

* 상기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관련 1인 3과제 참여 기준의 범위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과제 관리규칙」 과 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적용 사업의 지원과제를 대상으로 함

- 단,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연구기간 만료일이 2012. 12. 31 이전인 과제는 참여제한 과제수에 포함하지 않음

* 연구기간 만료일이 2012. 12. 31. 이후인 과제라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책개발 연구과제(정책주제형 대학중점연구소과제 포함),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 개인연구(우수논문지원, 우수학자지원사업), 소규모연구회지원사업, 인문주간 및 강좌 지원의 과제(시민인문강좌, 상설인문강좌),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산학협력형, 융합연구총괄센터)은 참여제한 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음

-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의 박사후 국외연수 지원사업 수혜자는 연구기간(지원기간)이 본 사업과 중복되는 자는 참여할 수 없음

* **참여제한은 연구비 신청 시에도 적용될 수 있음.** 즉, 신청한 과제(연구자)가 선정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참여제한에 저촉되면 신청 불가
 * 연구비 지급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포함된 연구과제는 **연구비 신청 이후에라도 조치사항이 발생 혹은 확인되면 최종선정에서 제외**

※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내 연구과제와 방문연구기간이 중복되어도 연구수행에 모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함

1. 평가단계

구 분	심 사 내 용	비 고
1단계(요건심사)	정보시스템에 의한 확인 심사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여부	연구재단
2단계(패널평가)	연구역량 및 연구계획서 우수성 등 평가	전공평가단
3단계(종합평가)	심사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종합평가단

2.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 참조]

3. 평가절차 및 방법

□ 제 1 단계 : 요건심사

- 심사방법 :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심사
- 심사내용 :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 제 2 단계 : 전공평가

- 평가방법 : 패널별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과제별 개별심사
- 평가내용 :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서 우수성

□ 제 3 단계 : 종합평가

- 평가주관 : 종합평가단
- 평가내용 : 전공평가결과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심사점수 우선순위와 예산배정 기준 등을 고려)

※ 평가결과 최종 점수 70점 미만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

4. 선정 및 협약체결

□ 선정취소 요건

- 연구계획서 등 제반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는 자
- 공동연구의 경우, 선정이후 별도 지정일까지 해당국 공동연구자 공동연구 수락서 미제출자
- 선정된 후 '13. 6. 30까지 출국하지 않은 연구자
- 신청자격 제한 사항 및 기타 신청요강을 위배한 연구자

□ 예비선정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예비선정 과제를 공개 하여 타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 등을 방지

□ 최종선정 : 예비선정 기간 중 중복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선정

□ 협약체결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주관연구기관(장), 연구자 3자간 연구비 협약 체결

1. 연구비 지급

○ 지급방법 및 시기

- ※ 연구자의 소속 기관은 과제별 협약 체결 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함
- 재단은 선정 후 1개월 이내 연구자 소속기관(또는 산학협력단)으로 일괄 지급
- 연구자는 출국 1개월 전에 온라인으로 연구비 신청서(신청요강 6페이지의 선정 후 제출서류 포함) 제출
- 소속기관은 신청서류 확인 후 출국 전에 연구자에게 개별지급

2. 연구비 관리

-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주관연구기관)이 중앙관리
- 연구비는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중앙관리부서는 연구자가 연구 중 조기 귀국하거나 일시귀국 할 경우 허용일수를 초과한 경우는 해당 일수에 따른 지원비를 일할 계상하여 회수, 반납하여야 함
 - 1년 연구자는 30일, 6개월 연구자는 15일 내에서 임의로 일시귀국 가능

1. 연구과제 수행

연구계획 변경

- 연구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
 - 연구과제명, 연구기간(6개월 연구자에 한하며 연구기간은 6개월 연장만 가능, 이때 연구비 추가 지원은 불가) 변경 가능(방문국가 변경은 불가)

일시귀국

- 1년 방문 연구자는 30일, 6개월 방문 연구자는 15일 내에서 임의로 일시귀국 가능
- 허용일 수 초과 시는 사전에 “일시귀국 사유서(자유형식)”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초과 일수 만큼 연구비를 추후 일할 계산하여 반납
- 일시 귀국할 경우, 제반 경비는 연구자 본인 부담

2. 보고서 제출

각종 보고서 제출 기한

체재지 도착보고서	귀국 보고서	결과 보고서	최종 연구결과물
연구개시 후 1개월 이내	연구종료 후 1개월 이내	연구종료 후 6개월 이내	연구종료 후 2년 이내

※ 단, 귀국보고서 제출시기가 도래하였지만, 미귀국하였을 경우에는 미귀국보고서 제출

※ 연구기간이 1년인 경우,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 e-mail로 진행사항 보고(소정서식)

체재지 도착보고서 제출

- 제출방법 : 온라인 탑재
- 제출서류 : 소정서식

□ 귀국 보고서 제출

- 제출방법 : 온라인 탑재(출입국 사실증명서 첨부)
- 제출서류 : 소정서식
 - ※ 단, 귀국 보고서 제출시기가 도래하였으나 미귀국하였을 경우에는 미귀국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직접입력 및 파일탑재)
- 제출자료
 - 연구결과보고서(자유형식, 원문파일 탑재)
 - 연구요약문(국·영문, 직접입력)
 - ※ 연구요약문은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
 - 연구결과 개요보고서(직접입력)
 - 연구성과 및 연구성과물 등의 정보입력

연구수행과정에서 획득한 통계,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등 각종 자료는 연구수행기관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한국연구재단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 및 최종연구결과물 공개 및 활용
 - 제출된 연구결과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또는 기초학문자료센터(www.krm.or.kr) 등을 통해 PDF 형태로 공개 가능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기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연구부정행위 사례(예: 허위 및 표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은 소정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제재조치 결과 및 명단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음

□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 제출방법 : 온라인 탑재
 -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하지 않음
- 제출자료 : 아래 국외전문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1편 이상
 -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하며, 공동연구의

경우 해외공동연구자가 공저자로 표기되어야 함

인문사회분야	이공분야
- 국제적 수준 학술지 : SCI&SCIE, A&HCI·SSCI, SCOPUS - 영어권 국가 또는 파견국가에서 발행하는 우수 저널	- 국제적 수준 학술지 : SCI&SCIE, A&HCI·SSCI, SCOPUS

○ 사사표기

연구결과발표 시,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국문표기 시	이 논문 또는 저서는 ○○○○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선정연도-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선정연도-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 해당 사업코드 : 013

※ 연구결과발표물 사사표기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이 아닌 타기관 일부 지원 병기표기를 허용함

□ 연구결과보고 및 연구결과물 미제출시 제재

○ 연구결과 및 연구결과물 관련 의무 미이행 과제는 「학술진흥법」 제20조 및 『학술진흥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처리

※ 세부 제재 조치기준은 향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개정 후 별도 공지

3. 연구성과 관리

□ 연구자는 연구진행부터 연구결과물 제출 후에라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성과(세계인명사전 등재 사실, 각종 언론보도 내용, 인력양성 실적 등) 및 연구성과물(논문, 저서, 각종 보고서, 특허, 기술 발명, 원자료, 중간산출물)을 탑재하여야 하며, 한국연구재단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성과물을 송부하여야 함

- * 연구성과물은 연구성과 중 연구자가 수집·작성한 원자료와 중간산출물을 포함
 - 원자료는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참고한 일체의 자료(단, 저작권 미해결자료 및 타 기관 기 구축 자료는 제출 불가)
 - 중간산출물은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일체의 자료(예: 사진자료,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통계자료 등)

□ 한국연구재단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제34조에 따라 연구성과물의 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여야 함

○ 국회도서관, KERIS, NTIS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활용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KRM)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원문, 음성, 동영상, 이미지 등) 서비스 제공 등

1. 간접비 : 본 사업은 간접비를 지원하지 않음

2. 학술지 평가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 '14.12.31. 학술지 평가제도 폐지('11.12.7. 발표)에 따라 단계적인 조치를 위해 사업별로 신청 자격 및 결과물 제출에 사용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 기준을 '13년부터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학술지”로 변경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고

3. 기타 참고사항

- 신청시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입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신청자(연구책임자)는 평가결과 발표 후 일정기간 해당 과제의 평가결과와 관련된 평가의견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단, 타 신청자의 연구계획서 및 평가내용 등 제반 사항은 비공개 대상임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의거,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아 연구에 해당되는 연구과제의 경우, 해당 연구기관은 배아 연구기관으로의 등록과 해당 연구계획에 대한 승인을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얻어야 함에 따라,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배아연구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문 의 처

□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 사업 및 신청요강 관련 문의

- 인문사회연구지원팀 : 042-869-6132, 6134

○ 사업총괄기획 및 규정 관련 문의

- 인문사회연구총괄기획팀 : 042-869-6107

○ 전공평가 관련 문의

- 어문학분야 : 042-869-6391 ~ 3

- 역사철학분야 : 042-869-6245 ~ 6

- 법정상경분야 : 042-869-6301 ~ 2

- 사회과학분야 : 042-869-6083 ~ 4

- 문화융복합분야 : 042-869-6136 ~ 7 (예술체육·융복합분야)

○ 전산 관련 문의(온라인신청, 연구업적통합정보, 전산장애)

- 정보팀 Help Desk : 1544-6118

붙임

평가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측정지표	심사내용
연구역량 (50)	연구실적	○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업적이 축적되어 있는가
	연구능력	○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 ○ 대표논문이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질적 수준에 도달하는가
타당성 (20)	해외방문연구의 타당성 및 필요성	○ 학술적 측면에서 해외방문연구가 필요한 분야.주제인가 ○ 연구가 해당국가(기관)에서 수행되면 효율적인가 ○ 해당국가 counterpart와 공동연구 및 협력이 가능하며, 필요한가 ○ 해당기관의 각종 기자재 사용이 가능하며, 필요한가
독창성 (15)	연구주제 및 방법의 독창성	○ 참신한 연구 주제인가 ○ 새로운 지식 또는 이해를 창출하는가 ○ 독창적인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는가 ○ 새로운 자료수집 방법(도구)을 시도하는가
학문발전 공헌도 (10)	학문적 가치	○ 기존의 이론을 발전시키는가 ○ 기존의 연구 방법론을 발전시키는가
	학문의 균형발전	○ 해당 학문분야가 희귀하거나 소외되어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가
	학문의 파급효과	○ 해당분야 지원성과를 높일 수 있는 과제인가 ○ 연구결과가 국내의 많은 후속연구를 파생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는가
구체성 (5)	실행계획의 구체성	○ 해외방문연구 수행과정이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 자료수집, 분석, 해석방법과 도구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100점		